# $\prod$

# 보험사기 관련 법제

본장에서는 보험사기 또는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규와 자율규제 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 후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내용 및 개정안 발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외의 법제

보험사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 대해서는 2항에서 별도로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본항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을 제외하고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규 및 자율규제 등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고자 하며, 여기에서는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5)과 관련된 법규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다.

#### 가.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전에는 보험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되었으 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일(2016. 9. 30) 이전에 행해진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여 전히 형법 제347조가 적용된다.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형법 제353조),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의 경

<sup>5)</sup>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그 자체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에는 해당하지 않음은 Ⅱ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음

우에는 1/2까지 가중하며(형법 제351조), 미수범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형법 제352조).

한편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함)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나. 상법

상법은 고의사고에 대해 면책 사유로 규정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59조).6)

또한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해당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한다(상법 제644조).7)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상법상 고지의무 조항이 관련될 수 있다. 상법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만약 보험계약 시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8)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5조).9)

상법상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이른바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나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및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초과보험

<sup>6)</sup> 다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고의사고만 면책대상에 해당하여,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함(상법 제732조의2)

<sup>7)</sup>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무효로 하지 않음

<sup>8)</sup>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함

<sup>9)</sup> 다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음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되, 보험회사는 해당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1항 및 제4항).

#### 다. 민법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의 경우 민법에 의해서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우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위에서 살펴본 상법상 고지의무 조항(제651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민법 제110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다. 10)

한편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에 해당하는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부정하게 보험 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한 보험계약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며 위험 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기·경위,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의해 그러한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특히 보험계약자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의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정, 저축적 성격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여러 건 가입하고 수입의 많은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한 사정, 짧은 기간에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해 가입하는 등 통상적인 가입 경위와는 다르게 자의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정, 보험계약 시 자기의 직업·수입이나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사정,

<sup>10)</sup>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본다.<sup>11)</sup>

#### 〈그림 Ⅲ-1〉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추인 정황

보험계약자의 직업·재산 상태, 보험계약의 규모·성질,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경위,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 라. 보험 표준약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의한 보험 표준약관에서도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취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의 표준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 등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sup>11)</sup>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는 그 요건이나 효과가 다르지만, 개별적인 사안에서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와 같은 구제수단이 병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봄

피보험자나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 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 마. 보험업법

보험업법에서도 보험사기행위를 금지하는 명문의 조항을 두고 있다. 즉, 보험업법 제102 조의2에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 는 보험사기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12)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위 조항은 보험사기를 금지하는 선언적 규정 정도로 이해된다. 13)

또한 보험업법 제102조의3에서는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 다. 14) 이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 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 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①의 경우 Ⅱ장에서 살펴본 보험 사기의 유형 중에서 고의사고 및 허위사고, ②의 경우 사고내용 조작 유형과 관련된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 사, 손해사정업자가 위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90조 제2항, 제190조).

<sup>12)</sup> 이 조항은 2008년에 신설되었는데 당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 특별 법상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정의 조항도 적용되지 않을 때였음

<sup>13)</sup> 정채웅(2017)

<sup>14) 2014</sup>년에 신설된 조항임

#### 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운영하고 있다(행2018-41002). 15) 해당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 계약 심사, 상품 판매, 보험금 지급 등 각 업무 단계의 보험사기 유발 요인을 사전 통제하여 보험사기를 예방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 단계에서 담보의 보장 내용 등에 대해 보험사기 취약 요인이 없는지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계약 심사단계에서는 담보군별 위험 보장 목적에 부합하게 보험가입한도를 설정·변경하고,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계약을 합리적으로 선정 및 심사하는 체계와 보험사기와 관련된 정보를 계약 심사에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상품 판매 단계에서는모집 조직의 보험사기 유발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조사 남용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 조사 절차에 대한합리적인 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하며, 아울러 모범규준에서는 보험금 지급 단계와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내용도 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인수, 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조사 및 소비자 보호 업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험사기 유발 요인을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사기 예방 이행실태점 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체계적 · 객관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23년 5월 모범규준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개정 모범규준에서는 계약심사 단계에서의 신용정보원 집중 정보 활용, 계피상이 사망보험에 대한 확인 강화, 계약정보 조회 및 계약정보 변경 시 본인인증 강화, 보험사기 유발요인 발굴 시 절차 정비, 손해사정업자 및 의료자문 중개업체와의 보험사기 정보 공유 체계에 관한 내용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sup>15) 1</sup>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현행 모범규준의 유효기간은 2023. 5. 11~2024. 5. 10임

#### 〈그림 Ⅲ-2〉 보험사기 예방 이행실태 점검 항목 예시

#### 보험상품 개발 단계

- 새로운 담보 개발 또는 보험가입한도 상향 조정 시 보험사기영 향도 평가 실시 여부
- 기존 보험사기 취약상품 사례를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보험사 기 평가 항목을 작성했는지 여부
- 보험사기 취약 평가 항목에 대해 적정한 대응 방안 수립 및 보 험사기영향도 평가위원회에서의 충분한 논의 이후 판매가 결정 됐는지 여부
- 보험금 지급 담당 부서에서 보험사기 취약 담보로 개선 건의 시 보험사기영향도 평가 재실시 여부

#### 보험계약 심사 단계

- 정액담보의 경우 보험가입한도 설정의 적정성 여부, 보험가입 한도 설정·변경시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한 보험가입금액 합산 적용 여부, 보험가입한도 상향 변경시 보험사기영향도 평가 실 시 여부, 계약 체결 이후 정기적 모나터링 여부
- 고지의무 위반 계약의 합리적 선정 및 적부 심사 여부
- 보험사기 취약 계약, 보험사기 적발 정보 등을 계약 심사 시 적 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

#### 보험상품 판매 단계

- 보험사기 취약계약 다수 모집 보험설계사의 합리적 선정 및 해 당 보험설계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 여부
-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의 유형 화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리 여부
  -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에의 명시, 영업점에의 게시, 모집조 직 대상 교육, 모집조직의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제보 활성화 등

#### 보험금 지급 단계

- 보험사기 혐의 조사를 위한 보험금 지급 조사 대상에 대한 합리 적 기준 마련 여부
- 보험금 지급 조사 대상 기준 부합 건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 심 사 및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 보험사기에 대한 혐의점 확보 시 감독당국에의 보고 및 수사의 뢰 조치 여부
- 보험금 지급 심사 담당자의 의견 취합 및 결과 분석, 관련 부서 에의 환류 및 관리 여부

자료: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별표 3 중에서 발췌함

# 사.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업계 자율규제로서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운 영하고 있다. 16) 해당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와 조사원(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담당부서 소속 임직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 사의 보험사기 방지 능력을 제고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조사 업무 수행 및 위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보상조직과는 구분되는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 고,17) 체계적인 보험사기 조사 및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해 보험사기 방지 업무규정을 제 정·우영하고 보험사기 방지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 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sup>16) 2020. 6. 30.</sup> 시행

<sup>17)</sup> 다만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담부서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전담직원을 지정·운용할 수 있음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 관련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이 보험사기행위의 수사·조사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도출된 경우 등에는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구체적 혐의점과 보험사기행위로 판단한 근거를 기록 및 첨부하여 수사의뢰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의 유죄 확정판결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보험업종사자의 인적사항, 판결문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하거나 삭감해서는 안 되고,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감액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조사로 인해 약관상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지체 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에 대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 아.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최근에는 고액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정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로 구성된 TF를 통해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18)

현재 보험회사별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사망담보 보험에 가입할 경우 타사 가입금액, 소득 재산 등 재정 심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회사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또한 자사한도 이내인 경우에는 타사 가입 금액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인수를 하고 있어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보험사기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 청약 건에 대해서는 특별인수심사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청약 건 중에서 가입 특성, 사망

<sup>18)</sup>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7. 10),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담보금액, 사망담보 계약 수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특별인수심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우선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 ② 피보험자 기준으로 사망담보금액 30억 원(전체 보험회사), 4건 이상 가입한 경우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이러한 특별인수심사 대상 건에 대해서는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잔여기대소득 실제소득 비교, 납입보험료와 납 부능력 비교 등 강화된 재정 심사를 적용하게 된다.19)

##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 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sup>20)</sup> 2016년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2016. 3. 29. 제정 및 2016. 9. 30. 시행). 아래에서는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내용과 그에 대하여 발의된 개정법률안들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21)

#### 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내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방지,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국민 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제1조),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이 적용되다(제3조).

#### 1)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관련

과거에는 보험사기에 대해 다른 사기죄와 구분하지 않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였으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하 고자 하였다. 즉,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

<sup>19)</sup> 향후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회사별로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할 예정 이라고 함

<sup>20)</sup> 법제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개정이유

<sup>21)</sup> 본항에서 법률명 없이 조문 번호만 소개하는 경우 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조문을 말함

상에 해당하는데(형법 제347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하여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였다(제8조).

형법상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상습범에 대해서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고(제9조), 미수범 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제10조). 또한 보험사기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을 두어, 보험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 금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표 Ⅲ-1〉 형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비교

구분	형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금지행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보험사기행위(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처벌수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형의 1/2까지 가중				
미수범	미수범 처벌				
이득액에 따른 가중 <sup>22)</sup>	5억 원 ≦이득액〈50억 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득액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가능				

# 2) 보험사기행위 조사 및 수사 관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조사 및 수사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다.

먼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그 밖에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

<sup>22) 1</sup>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23)에 보고할 수 있다(제4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해당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제6조).

또한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그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심평원은 해당 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법상 사기죄에 비하여 벌금액 상한을 상향 조정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24)</sup> 그러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비단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보험사기행위의 조사·수사를 위한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기를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 3)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관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며(제5조 제2항), 이의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한다(시행령 제3조).

<sup>23)</sup>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4조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권한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됨

<sup>24)</sup> 김슬기(2016), 전지연(2017), 김계환·문정균(2023)

#### 〈표 Ⅲ-2〉 보험금 지급 지체 등 사유

####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하거나 삭감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1.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도 록 정하는 경우
- 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 제4조에 따른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 나. 법 제6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 3.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보험금의 감액 합의 또는 보험금 청구권의 포기 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訴)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민사조정법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 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제5조 제1항).

아울러,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제12조), 이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조).

#### 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및 시행 후로도 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아래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들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진행 상황을 살펴보다.

#### 1) 주요 쟁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해서 제20대 국회(2016. 5. 30~2020. 5. 29)에서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제21대 국회(2020. 5. 30~)에서는 2023년 9월 기준 총 17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다수의 개정안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주된 항목으로는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반환 의무 도입, 보험사기행위 알선등의 금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입원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등이 있다.25)

#### 가)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국회에 발의된 총 17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중에서 8건의 개정안<sup>26)</sup>이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정보 수집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당국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 이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선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27)

개정안에 따라서 세부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자료제공 요청의 주체를 금융위원회로만 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sup>25)</sup> 백영화(2023), 황현아·손민숙(2022)

<sup>26)</sup> 이주환 의원안, 윤창현 의원안, 김한정 의원안, 윤관석 의원안, 김병욱 의원안, 홍석준 의원안, 박재호 의원안, 강민국 의원안

<sup>27)</sup>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이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위해 공공기관, 요양기관,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기행위나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유인 행위의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해서 금융당국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 나)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보험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법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종사원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총 8건의 개정안<sup>28)</sup>에서 제안하였다. 개정안에 따라서는 처벌 강화 대상에 보험회사의 임직원을 포함시킨 경우도 있고, 위반사실 공표에대한 내용을 함께 제안한 경우도 있다. 처벌 강화의 내용은 개정안별로 조금씩 상이하여,해당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거나 법정형 자체를 상향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금의 산정 또는 지급에 관여하는 자가 그 전문 지식이나 보험금 심사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경우 일반적인 사기행위에 비해서 적발이 어렵고 그 행위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일반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로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직업군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의 예방·억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다)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기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 받은 보험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청구한 보험사기행위 관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8건의 개정안<sup>29)</sup>이 해당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개정안 중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유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점을 함께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sup>28)</sup> 이주환 의원안, 윤창현 의원안, 홍성국 의원안, 김한정 의원안, 윤관석 의원안, 홍석준 의원안, 박재호 의원안, 소병철 의원안

<sup>29)</sup> 이주환 의원안, 윤창현 의원안, 김한정 의원안, 윤관석 의원안, 김병욱 의원안, 홍석준 의원안, 박재호 의원안, 강민국 의원안

등이 보험사기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회수하기 위해 서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의 소송 절차 중 범죄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인해 보험금 환 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 의무를 법률 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험사기를 통해 불법적인 재산상 이득을 수취하는 것을 방 지하려는 취지이다.

#### 라)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등의 금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6건30) 발의되었는데, 보험사기행위 의 알선·광고 또는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유인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최근 SNS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광고를 가장해 보험사기를 조장하거나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 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확대됨에 따 라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등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이다.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은 개정안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는 하는 경우, 보험사기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우, 보험사기보다 낮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보험사기행위의 알 선 등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함께 규정하는 경 우가 많으며,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유인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방송통 신위원회를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방송통신위원 회에 대해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 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총 4건31)의 개정안에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보험사 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조직을 마련하되, T/F 형태의 한 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법률상 근거를 둔 상설 조직으로 설치·운영하려는 취지이다. 경찰

<sup>30)</sup> 김한정 의원안, 윤관석 의원안, 김병욱 의원안, 홍석준 의원안, 박재호 의원안, 박수영 의원안

<sup>31)</sup> 윤관석 의원안, 박재호 의원안, 소병철 의원안, 박수영 의원안

청 소속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와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금융당국, 보건당국, 수사기관 간의 공조와 협의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 바) 입원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입원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그 경우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원적정성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총 4건3<sup>2)</sup>의 개정안에서 해당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심평원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등과 사전에 협의해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입원적정성 심사기관에 심평원 외에도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의학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하는 경우,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사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 사) 기타

그 밖에도 보험사기에 대한 벌금형의 상향 조정, 보험사기 목적 강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보험사기방지기금의 설치·운용, 보험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신설,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 도입, 자동차보험료 할증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명시 등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sup>32)</sup> 김한정 의원안, 윤관석 의원안, 소병철 의원안, 윤주경 의원안

# 〈표 Ⅲ-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번호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자	주요 내용
1	2101190	이주환 의원	2020. 6. 30	<ul><li>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li><li>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li><li>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및 보험계약 해지</li></ul>
2	2102553	윤창현 의원	2020. 7. 31	<ul><li>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li><li>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li></ul>
3	2106276	홍성국 의원	2020. 12. 9	<ul> <li>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li> <li>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li> <li>금융당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고·검사 및 제재조치 근거 마련</li> <li>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전담조직 및 보험사기 조사 절 차·기준 마련</li> <li>자동차보험료 할증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사기 피해 사실 고지 의무</li> </ul>
4	2106861	김한정 의원	2020. 12. 23	<ul> <li>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li> <li>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li> <li>금융당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고·검사 및 제재조치 근거 마련</li> <li>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전담조직 및 보험사기 조사 절 차·기준 마련</li> <li>자동차보험료 할증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사기 피해 사실 고지 의무</li> <li>보험회사의 수사기관 통보 사실 누설 금지</li> <li>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li> <li>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고 금지</li> <li>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및 보험계약 해지</li> </ul>
5	2114398	윤관석 의원	2022. 1. 14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및 보험계약 해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유인 금지     입원적정성 심사기관 확대 및 심사 기준 마련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 도입     보험사기방지기금의 설치·운용
6	2115568	김병욱 의원	2022. 5. 12	<ul> <li>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li> <li>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및 보험계약 해지</li> <li>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유인 금지</li> <li>심평원의 수사기관 통보 의무</li> <li>보험회사의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시 당사자 통지 의무 유예</li> </ul>

# 〈표 Ⅲ-3〉계속

번호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자	주요 내용
7	2115967	이정문 의원	2022. 6. 15	<ul> <li>보험회사의 수사의뢰 시 금융위원회 보고 및 자료보존 의무</li> <li>수사의뢰 관련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통보 의무 등</li> </ul>
8	2116023	이종배 의원	2022. 6. 17	• 보험사기죄의 벌금형 상향
9	2116832	홍석준 의원	2022. 8. 11	<ul> <li>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li> <li>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유인행위시 보험계약 해지</li> <li>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유인행위에 대한 처벌 및 보고, 통보 등</li> <li>보험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신설</li> </ul>
10	2117422	박재호 의원	2022. 9. 20	<ul> <li>금융당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li> <li>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명단 공표</li> <li>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li> <li>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유인 금지</li> <li>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 신설</li> <li>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 도입</li> </ul>
11	2117766	소병철 의원	2022. 10. 11	<ul> <li>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li> <li>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li> <li>보험사기죄의 벌금형 상향</li> <li>입원적정성 심사기관 확대</li> <li>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단 신설</li> <li>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li> </ul>
12	2118443	강민국 의원	2022. 11. 24	•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이 득액 반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및 보험계약 해지
13	2120025	김희곤 의원	2023. 2. 15	• 보험사기죄의 벌금형 상향
14	2120419	윤주경 의원	2023. 3. 3	•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 근거 마련
15	2121245	박수영 의원	2023. 4. 11	•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의 명 단 공표
16	2121280	박수영 의원	2023. 4. 12	•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고 금지
17	2121390	박수영 의원	2023. 4. 14	<ul><li>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 신설</li><li>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li></ul>

#### 2)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결과

2023년 7월 4일에 열린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들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해당 회의록에 의하면,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명단 공표,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보 험사기행위 알선 금지 등 앞서 살펴본 주요 쟁점 사항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개정이 합의 되었다.33)

한편 입원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중 입원적정성 심사기관 확대는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의 적정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심사기관을 확대하는 경우 심사기관의 전문성에 차이가 있고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신설에 관한 내용도 제외되었는데, 현재 보험업법 제163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보험조사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 등이 합동으로 보험사기 관련 공동조사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기관 간의 MOU 체결 등을 통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조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정부합동대책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명시적인 조항을 두는 것이 반드시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위와 같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정무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 순서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sup>33)</sup> 국회사무처(2023)